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8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김소양, 김종무, 김진수,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종환, 이태성, 전석기,
조상호, 한기영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등에 따른 긴급주거지원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 지역 주거복지센터 및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확보한 장기 미임대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임대주택을 활용해오고 있었음.
- 이에 서울시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1호 신설)

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재해구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제20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생략)</p> <p>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9. (생략)</p>	<p>제7조(주거복지사업) ----- -----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u>」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문서번호	2021080400000018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이성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4	
회신일 : 2021.08.06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계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제2항제9호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긴급임시주택 지원 = 6,809,125천원
 - = 임대보증금+임대료+인건비+사업비
 - = 2,120,375천원+1,335,000천원+2,401,250천원+952,500천원
- 임대보증금 = 2,120,375천원
 - = 1호당 임대보증금×125호
 - = 16,963천원×125호
 - ※ 1호당 임대보증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의 1호 기준 평균 임대보증금 16,963천원을 적용하되, 첫째(2022년)에만 비용 발생
- 임대료 = 1,335,000천원
 - = 1호당 연임대료×125호×5년
 - = 2,136천원×125호×5년
 - ※ 1호당 연임대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의 1호 기준 평균 연임대료 2,136천원 적용
- 인건비 = 2,401,250천원
 - = 1호당 연인건비×125호×5년
 - = 3,842천원×125호×5년
 - ※ 1호당 연인건비 :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의 1호 기준 평균 연인건비 3,842천원 적용
- 사업비 = 952,500천원
 - = 1호당 연사업비×125호×5년
 - = 1,524천원×125호×5년
 - ※ 1호당 연사업비 :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의 1호 기준 평균 연사업비 1,524천원 적용

※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의
5개 자치구별 각 5호(총 25호) 시범사업시 연간 소요예산 및 1호 기준 소요비용

구분	계 (천원)	세부 산출내역					비고 1호 기준 소요비용 (1년, 천원)
		기준 금액 (천원)	호수 (호)	자치구 수 (개)	기간 (개월or회)	합계 (천원)	
총 합계	611,635	-					24,465
합계	134,160	-					5,366
인건비	96,060	1,601	-	5	12	96,060	3,842
사업비	38,100	635	-	5	12	38,100	1,524
합계	477,475	-					19,099
보증금	424,075	16,963	5	5	1	424,075	16,963
임대료	53,400	178	5	5	12	53,400	2,136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안)(2020.7)’